#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3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0.

발 의 자:임이자·허은아·추경호

이종성 • 권명호 • 김형동

김영식 · 송언석 · 이종배

이명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,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절차 및"을 "절차, 제2항에따른 연장 절차 및"으로 한다.

②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
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취업활동 기간 제한에	제18조의2(취업활동 기간 제한에
관한 특례) ① (생 략)	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
	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 기간
	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감
	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
	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
	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
	<u>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	<u>③</u>
고용 허가 요청 <u>절차 및</u> 그 밖	<u>절차, 제2항에</u>
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	<u> 따른 연장 절차 및</u>
령으로 정한다.	